

일반

## 상속세 및 증여세 개선방안 연구

공제조항 및 부동산 과세체계를 중심으로\*

A Review on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Focusing on Deductions and Coherence with Property-related Taxes

박준\*\*

2018년 기준 상속세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의 수는 전체 사망자 수의 2.7%이며, 상속·증여세의 결정세액은 7.8조 원으로 전체 세수 378조 원의 약 2% 수준이다. 상속·증여세의 실효세율은 약 15.7% 수준이며, 과세미달인 자산가액을 합할 경우 그 비율은 10% 미만이다. 1950년 제정 당시에 비해 자산격차는 더욱 벌어졌지만, 부의 세습과 집중 억제 등을 통한 실질적 평등원칙 실현의 목표로 설계되었던 상속세와 증여세의 역할과 기능은 오히려 약해졌다. 제정 이후 명목 세율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다양한 공제조항들이 추가되고 강화되어 온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도입 목적과의 합목적성과 여건 변화에 따른 시의성을 기준으로 상속·증여세의 공제 등 감면조항을, 정합성과 일체성을 기준으로 부동산 과세체계 내에서 상속·증여세제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재산상속공제의 경우 비교 대상인 부동산 자산의 기준가액 현실화 추세를 감안하여 폐지를, 동거주택상속공제의 경우 상속세 대상이 되는 소수 자산상위 상속인을 대상으로 중산층 및 서민 대상의 상속세 부담감면과 장기주택보유 우대라는 명분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역시 폐지를, 기업상속공제의 경우 당초의 도입 명분에서 벗어나 중견기업 소유주 일가의 개인적 절세와 자녀기업승계 촉진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대폭 축소를 제안한다. 한편, 사전증여재산 합산의 기준은 고도화된 세무행정역량과 상속·증여 규모 증가에 따른 합산 기준기간 연장 추세를 반영하여 상속인·수증인과 비상속인 현행 10년 이내와 5년 이내를 각각 20년 이내와 10년 이내로 연장하여 보다 정교한 과세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상속·증여세의 배우자공제의 경우, 부부별산제도를 근거로 한 헌법재판소 중합부동산세 세대별합산 방식 위헌판결의 논리를 그대로 따른다면 상속·증여세에서의

\* 이 논문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위탁연구과제 「공시가격 변화 시나리오별 상속·증여세 영향분석 및 부동산자산 상속·증여세 개선방향 연구」에 기초한 연구임.

\*\*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부교수(joon.park@uos.ac.kr).

배우자 공제 규모도 타 인적공제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해당 판결에 내재하는 상속·증여세 관련 문제 등을 종합할 때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방식을 부부합산으로 개정하여 부동산 자산의 형성 및 관리 단위를 상속·증여세와 동일하게 부부로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한편, 상속 및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문제는 피상속 또는 증여 후에도 이후 해당 자산의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 기준을 상속 및 증여 시점의 가액이 아닌 피상속 및 증여인의 최초 취득가액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합리화할 것을 제안한다.

주요어: 상속세, 증여세, 금융상속공제, 동거상속공제, 기업상속공제, 부부합산

## 1. 서론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는 1950년 세수확보와 실질적 평등원칙 실현의 목적을 가지고 최고세율 90%로 제정되었다.<sup>1)</sup> 상속세의 본질이 부의 세습과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임을 고려할 때 사망 이전에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무상이전에 대한 보완 과세 성격의 증여세는 상속세와 동일 선상에 놓인다. 증여세도 1950년 증여를 통한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를 통해 조세형평성 제고, 재산분배의 공평, 국가재정 건실화를 위해 상속세의 보완 역할의 목적으로 역시 최고세율 90%로 제정되었다.<sup>2)</sup> 이후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통해 두 세제는 합쳐져 전면 개정되었다. 이는 소득수준 향상, 인구노령화,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 및 금융·부동산실명제의 실시,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전산관리체계를 구축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 및 과세구간을 통합하고, 배우자 간 상속·증여에 대한 공제액을 확대하는 등의 세제 체계를 정비하기 위함이었다.<sup>3)</sup> 상속·증여세는 이렇게 부의 집중 억제하고 경제적 기회균등을 보장하며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소득세 기능을 보완·강화하는 장치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되어 왔다.

1) 상속세법 제정이유(시행 1950.3.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 증여세법 제정이유(시행 1950.4.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정개정이유(시행 1997.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18년 기준 과세미달을 제외한 총 상속세 과세가액은 16.4조 원이며, 역시 과세미달을 제외한 총 증여세 과세가액은 47.6조 원으로 연간 약 64조 원 규모의 자산에 대해서 상속·증여세가 과세되고 있다. 하지만 2018년 기준 전체 사망자 29.9만 명 중 상속세와 관련된 피상속인 수는 8,002명으로 2.7% 수준이며, 실제 결정세액은 상속세와 증여세 각각 2.5조 원과 5.3조 원으로 합계 약 7.8조 원 수준이다. 현재 최고 명목세율은 50%이지만 담세율<sup>4)</sup>과 실효세율<sup>5)</sup>로 살펴보면 각각 12.2%와 15.7%이다. 이렇게 담세율 및 실효세율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결정세액 산정 과정에 존재하는 다양한 공제(deduction)와 세액공제(tax credit) 조항이다. 부의 집중과 세습 억제라는 상속·증여세의 본원적 도입 목적과 여건 변화를 고려한 상속·증여세의 공제 조항 등 감면 관련 조항 재정비가 필요한 이유이다.

2019년 기준 1경 2,200조 원으로 전체 순자산의 73.4%에 달하는 부동산 자산<sup>6)</sup>은 상속·증여세의 과세 재산가액 중 약 60%에 달하는 부동산자산의 높은 비중으로 이어진다. 1960년대 이후 본격적인 경제성장과 도시화 과정에서 자산을 축적해 온 베이비 붐 세대의 고령화와 함께 최근 상속 및 증여가 늘고 있다. 상속·증여세에 대한 관심은 최근 부동산가격 급등에 따른 다주택자 대상 규제 강화 과정에서 부동산보유세 및 양도소득세를 상향 조정하면서 더욱 커졌다. 이들 세금을 피하는 절세 전략의 일환으로 세대 간 증여가 활용되기 때문이다.<sup>7)</sup> 2020년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3.2%에서 6.0%로 인상 적용되었으며 양도세율도 대폭 강화됨에 따라 지난 9월 서울 지역의 아파트 증여 거래는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6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sup>8)</sup> 고가 아파트가 밀

4) 상속세 과세가액 대비 결정세액으로 계산.

5) 과세표준 대비 결정세액으로 계산.

6) 통계청·한국은행(2020)의 2019년 국민대차대조표, 4쪽;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 토지 자산의 합으로 계산.

7) “사전상속·증여 급증 … 2020년 상속·증여액 104조 돌파 예상”, 《세정일보》, 2018년 3월 21일 자.

집해 있는 강남 3구 지역의 증여 거래가 더 활발한 것은 부동산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기 위한 우회수단으로 증여가 활용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부동산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와 연계한 전체 부동산 과세체계 차원에서 상속·증여세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상속·증여세의 공제조항 등 감면 관련 조항과 부동산 과세체계 내에서 상속·증여세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상속·증여세 연혁 법령상 공제조항의 변천과정 및 여건 변화에 대한 조사, 그리고 도입 목적과의 정합성 분석을 통해 상속·증여세 감면조항의 시의성과 합목적성을 검토한다. 또한 부동산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타 세제와 상속·증여세의 연계지점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을 검토하여 부동산 관련 세제 체계의 일관성과 정합성을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상속·증여세, 부동산보유세,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기존 연구논문 및 보고서에 대한 문헌조사, 연혁 법령 및 현행 법령 조항 분석을 수행한다.

이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3장에서는 상속·증여세 과세 체계와 과세현황을 검토한다. 4장에서는 상속·증여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하며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 2.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상속·증여세에 대한 과세 근거는 상속유산에 대한 국가귀속설 및 국가공동상속설, 상속에 의한 재산승계에 대해 국가가 규율할 권리가 있다는 국가과세권력설, 재산 이전행위에 대한 보호의 대가라는 국가용역대가설, 피상

8) “세금 올리자 ‘우르르’... 강남 3구 아파트 증여, 거래 절반 육박”, 《한국일보》, 2020년 9월 20일자.

속인이 생존 시 회피했던 조세 정산을 위해 필요하다는 회피조세정산설, 담세능력에 비례하여 과세한다는 응능부담력설, 우발소득과세설 등 법이론적 경제이론적 근거가 있다(West, 1893; 최명근, 1990, 2007). 또한 사회정책론적 근거로서 기회균등을 위한 과세, 인적자본 비과세에 대한 보완과세, 권력 및 부의 집중억제라는 근거가 있다(최명근, 1990, 2007).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 시 무상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상속자인 취득자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며, 이를 피해 사망 이전에 무상이전하는 재산에 대한 과세인 증여세와 보통 하나의 조합을 이루고 있다. 자산의 이전은 대가가 있는 유상이전과 대가 없이 이전하는 무상이전으로 나뉘며, 유상이전에 대해서는 양도이익에 따른 양도소득세(자본이득세)로,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상속인 및 수증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로 과세한다(김두복·서희열, 2018).

상속·증여세와 관련한 연구는 크게 상속·증여세의 완화 또는 강화를 주장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상속·증여세의 완화 및 강화 논의의 주요 쟁점은 주로 공제조항, 세율,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등 과세방식 등이며, 공제조항과 관련한 연구에서 주로 다뤄진 주제는 배우자 공제와 기업 상속 공제와 관련한 내용들이다. 국외 연구들에서는 공평성 및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한 개편, 상속세율에 대한 유증 탄력성 및 분배지표 및 재분배 등 사회적 수용도를 고려한 최적 세율 추정, 사회적 불평등 및 재정기여 등 차원에서 세제 강화 등을 다룬 연구들이 있다.

예컨대, 상속·증여세 완화를 주장하는 연구 중 박성만·정범식(2011)은 배우자에 대한 상속 및 증여 공제에 대한 연구에서 배우자 상속지분을 자녀 수와 관계없이 50% 이상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과 혼인 중 공동형성 재산의 증여 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폐지를 주장했다. 김두복·서희열(2018)은 상속세제 유지의 관점에서 현행 세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과세체계의 개선방안으로 현행 유산세체계에서 유산취득세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명의신탁부동산에 대한 법적 정비, 1세대 2회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 간 상속세는 완전면세나 전액공제, 신고납세제도 변경 등을 제안했다. 홍승현·오문성(2019)의 연구에서는 기업상속 관련 현행제도의 기업 경영권 보호

의 기본 취지에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단기적 개선방향으로 규모별로 기업 상속 공제 차별을 두지 말고,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 중 대표이사요건을 이사직 전제의 최대주주요건으로 대체 등을, 장기적인 개선방향으로 기업 상속공제 폐지 후 과세이연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이상신(2019)은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방향 연구에서 단기적으로 사전상속 가산기간 10년을 3~5년으로 단축하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과세표준 구간, 세율, 기준 금액 등의 변경, 배우자공제한도의 30억 원 이상 증액 또는 제한 폐지를 주장했으며, 장기적으로 유산세 과세방식의 유산취득세 방식 개편, 배우자 지위를 강화하는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상속·증여세 강화를 주장하는 연구 중 성락인 외(2003)의 연구에서는 변칙증여를 통한 증여세 회피를 대부분 막지 못하는 법의 맹점을 규명하고 그 대책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의 포괄적 규정을 담은 완전포괄주의의 도입을 주장했다. 서정우(2018)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작은 과세인원 비율과 세수액이 상속세가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 비교국가의 인적·물적공제 및 세율제도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했다. 주요 시사점으로 기업상속공제는 다음 세대로의 개인의 부 이전 지원이 아닌 전문성 갖춘 개인 사업가의 사업 지속성 지원의 성격에 맞게 대상 기업의 범위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하며, 비교 대상 국가들에서 대체로 최근 5년 간 상속세·증여세의 세부담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방향으로의 정비를 주장했다. 이충희·최한수(2019)의 연구에서는 상속세에 대한 최고세율, 높은 상속세율로 인한 기업 상속포기, 국제비교에서 우리나라 상속세가 높다는 등의 주장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하나씩 밝히며 상속세와 관련한 오해를 풀고자 했다.

한편, 관련한 해외 연구 중 Lee(2007)의 연구에서는 영국에서 1884년에 도입되어 변천된 상속세에 대한 고찰을 통해 현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했다. 비과세 기준금액이 높아 과세미달 상속인이 많은 점, 각종 공제로 오히려 고자산가보다 그 이하 계층의 부담이 더욱 큰 점, 결과적으로 2006/07년 영국 총 세수 4,244억 파운드 중 36억 파운드 약 0.85%에 불과한

점, 복잡한 구조로 행정비용이 과다하다는 점 등을 들어 현재의 상속세 체계가 공평하지도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도 않다고 결론 내리며 대대적 개정을 주장했다. Piketty and Saez(2013)의 연구에서는 장기 최적 상속세율을 추정함에 있어 총 소득, 상속세율에 대한 유증 탄력성, 분배지표 및 재분배를 고려한 사회적 수용도 등 요소와 형평성-효율성 상쇄관계를 고려한 분석을 수행했다. 그 결과 최적 상속세율은 50~60% 수준이며, 상속액이 큰 경우 그 이상의 세율의 적용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OECD(2021)의 연구에서는 37개 회원국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상속·증여세가 현재와 같이 자산 격차가 커지고 코로나 대유행 등을 통해 공공재정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세금임을 주장했다.

이 연구에서는 상속·증여세의 공제 등 감면조항을 다루되 시의성과 합목적성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동산 관련 타 세제인 부동산보유세와 양도소득세와의 관계 속에서 상속·증여세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3.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현황

#### 1) 상속세 결정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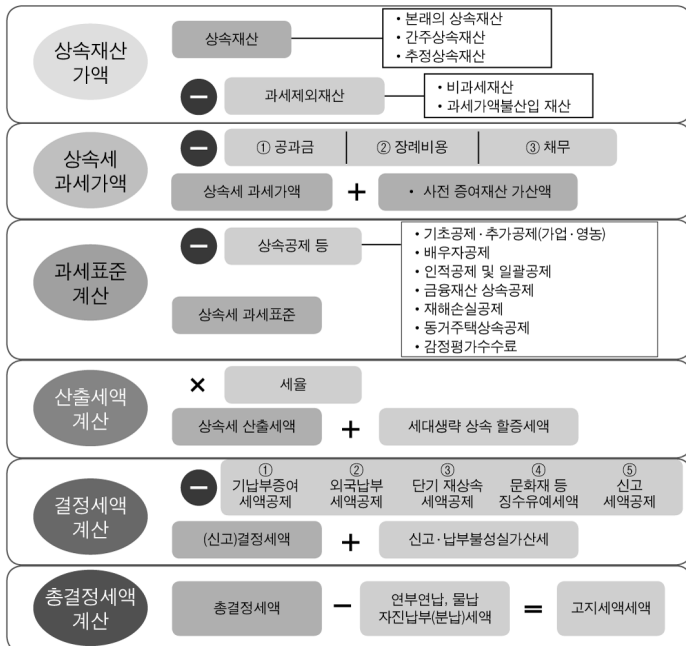
상속세의 산정은 크게 상속재산가액 산정, 상속세과세가액 산정, 과세표준 산정, 산출세액 산정, 결정세액 산정의 5단계 과정을 거친다. 상속재산가액은 비과세 재산 등을 제외한 사망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총 가액이다. 여기서 채무 등을 제외하고 사전증여재산 가액을 더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다. 이후 각종 상속공제를 제외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과세표준이 결정되면 이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산정한다. 이후 기납부 증여세액 등 세액공제를 차감 적용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산정한다. 공제조항을 포함한 상속세의 전체적 과세체계는 <그림 1>과 같다.

〈표 1〉 상속세 결정구조 및 현황

| 피상속인 수        | 8,002명        |  |
|---------------|---------------|--|
| 총상속재산가액       | 15.1조 원       |  |
| 공제금액          | ● 1.8조 원      | 채무 1.6조 원 등  |
| 가산증여재산가액      | ⊕ 3.1조 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증여재산가액</li> <li>- 상속인의 경우 10년 이내</li> <li>- 비상속인의 경우 5년 이내</li> </ul> |
| 상속세과세가액       | 16.4조 원       |  |
| 상속공제          | ● 7.4조 원      | 배우자 공제 3.2조 원, 기타공제 4.2조 원 등   |
| 과세표준          | 9.0조 원        |  |
| 산출세액          | 3.2조 원        | 누진세율 10~50%  |
| 세액공제          | ● 0.7조 원      | 증여세액 0.5조 원, 신고세액 0.2조 원 등   |
| <b>총 결정세액</b> | <b>2.5조 원</b> |  |

주: 국세청(2019) 『국세통계연보』의 2018년 상속세 자료를 토대로 작성.

〈그림 1〉 상속세 과세체계



출처: 기획재정부, 2019, 『조세개요』, p.166.



2019년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상속세 피상속인 수는 8,002명, 총 상속재산가액은 15.1조 원이며 최종결정세액이 2.5조 원인 가운데 상속공제액은 7.4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1.6조 원 등 1.8조 원을 제하고 3.1조 원 수준의 사전증여재산가액을 더해 상속세 과세가액 16.4조 원이 산정된다. 여기서 3.2조 원의 배우자공제 등 총 7.4조 원의 상속공제를 제외한 총 과세표준은 약 9.0조 원으로 산정된다. 각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총 산출세액은 3.2조 원 수준이며 여기서 기납부 증여세액 0.5조 원 등 총 0.7조 원을 제외한 2.5조 원이 총 결정세액이 된다.

## 2) 증여세 결정 구조

증여세의 산정은 크게 증여재산가액 산정, 증여세과세가액 산정, 과세표준 산정, 산출세액 산정, 결정세액 산정의 5단계 과정을 거친다. 증여재산가액은 비과세 재산 등을 제외한 증여재산의 총 가액이다, 여기서 채무 등을 제외하고 10년간 사전증여재산 가액을 더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한다. 이후 각종 증여공제를 제외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과세표준이 결정되면 이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산정한다. 이후 기납부 증여세액 등 세액공제를 차감 적용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산정한다. 공제조항을 포함한 증여세의 전체적 과세체계는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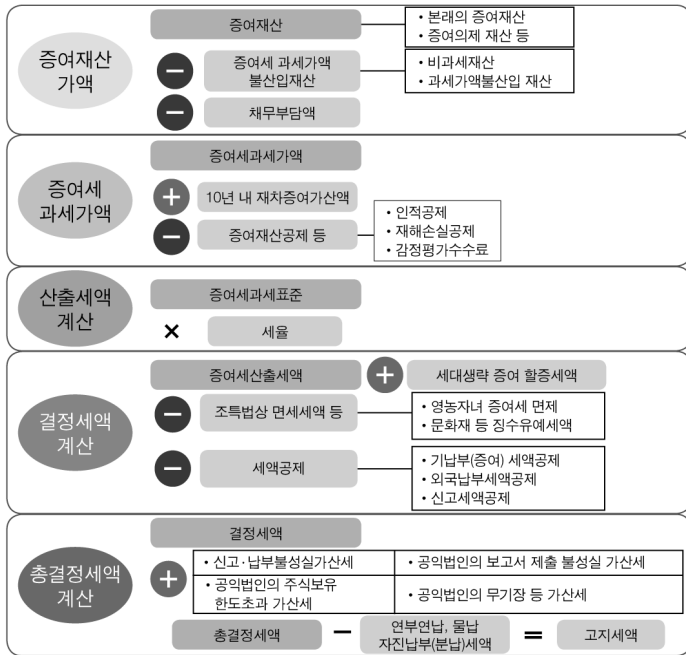
2019년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증여세 결정건수는 160,421건으로 증여세 최종 결정세액이 5.3조 원인 가운데 증여재산공제액은 7.0조 원에 이르고 있다. 총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 2.2조 원을 제하고 21.2조 원 수준의 10년간 사전증여재산가액을 더해 증여세 과세가액 47.6조 원이 산정된다. 여기서 2.3조 원의 배우자공제 등 총 7.0조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제외한 총 과세표준은 약 40.6조 원으로 산정된다. 각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총 산출세액은 12.6조 원 수준이며 여기서 기납부 증여세액 7.4조 원 등 총 7.7조 원을 제외한 5.3조 원이 총 결정세액이 된다.

〈표 2〉 증여세 결정구조 및 현황

|               |           |  |
|---------------|-----------|--|
| <b>결정건수</b>   | 160,421건  |  |
| 증여재산가액        | 28.6조 원   |  |
| 채무            | ● 2.2조 원  |  |
| 증여재산가액        | ⊕ 21.2조 원 |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1천만 원 이상인 그 가액 |
| 증여세과세가액       | 47.6조 원   |  |
| 증여재산공제        | ● 7.0조 원  | 배우자 2.3조 원, 직계존비속 4.4조 원 등                           |
| 과세표준          | 40.6조 원   |  |
| 산출세액          | 12.6조 원   | 누진세율 10~50%  |
| 세액공제          | ● 7.7조 원  | 납부세액 7.4조 원 등  |
| <b>총 결정세액</b> | 5.3조 원    |  |

주: 국세청(2019) 『국세통계연보』의 2018년 증여세 자료를 토대로 작성.

〈그림 2〉 증여세 과세체계



출처: 기획재정부, 2019. 『조세개요』, p.171.

### 3) 상속·증여세 세율 및 공제조항

상속세와 증여세는 1950년 당시 각각 20~90%까지 15단계의 초과누진세율과 15~90%의 16단계의 초과누진세율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으로 제도입되었으며, 이후 각각 30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 10~50% 5단계 세율로 통합 정비되었다(〈표 3〉 참고). 증여세는 1952년 개편 당시 ‘상속세법’으로 편입되었으며,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완전 통합개편되어 그 골격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1996년 통합개편에서는 소득수준의 향상, 인구 노령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금융부동산실명제로 인한 상속·증여세 운영의 실효성 제고 등의 여건 변화를 수용했다.<sup>9)</sup>

제도입 이후 현재까지의 변화는 크게 세율 인하 및 과세구간 단순화, 기초 및 인적공제 규모 확대, 금융상속공제 및 기업상속공제 등 신규 공제조항 신설, 변칙 증여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 추가 등으로 특징된다.

상속공제는 크게 인적 공제와 물적 공제로 나뉜다. 인적 공제는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한 공제가 있으며 물적 공제에는 기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이 있다. 현재 상속공제액은 〈표 4〉와 같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공제하는 기초공제에 더해 상속인 및 동거가족에 대한 기타인적공제액을 합산한 공제금액과 최소 5억 원의 상속공제를 보장하는 일괄공제금액 중 큰 금액을 선택하고 여기에 배우자 공제를 더한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증여공제는 크게 인적공제와 재해손실공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수증자가 10년간 각 항목별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공제 가능한 총 합계액을 말한다. 증여재산이 재난으로 인해 훼손되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재해손실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증여재산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라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친족 등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표 5〉의 기준에 따라 공제금액을 적

9) 국회예산정책처. 2017. 조세의 이해와 쟁점(5 상속세 및 증여세). 국회예산정책처. 28쪽.

〈표 3〉 상속·증여세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9,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2억 4,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10억 4,000만 원 |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제56조.

〈표 4〉 상속세의 공제

| 구분     | 공제액                                     |                            |                              |
|--------|---|----------------------------|------------------------------|
| 배우자공제  | 법정상속지분 내 실제 상속가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30억 원 한도) |                            |                              |
| 공제 ①   | 기초공제                                    | 2억 원                       |                              |
|        | 인적공제                                    | 자녀공제                       | 1인당 5,000만 원                 |
|        |   | 미성년자공제                     | 1천만 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
|        |   | 연로자공제                      | 1인당 5,000만 원                 |
|        |   | 장애자공제                      | 1천만 원 × 기대여명연수 <sup>1)</sup> |
| 공제 ②   | 일괄공제                                    | 5억 원                       |                              |
| 공제적용금액 |   | 배우자 공제 + 공제 ①과 공제 ② 중 큰 금액 |                              |

주: 1) 2010년 12월 27일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1항 제4호 중 "75세까지의 잔여연수"를 통계청장이 승인·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로 함.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21조.

〈표 5〉 증여세의 공제

| 구분      | 공제액      |
|---------|----------|
| 배우자공제   | 6억 원     |
| 직계존속 공제 | 5,000만 원 |
| 직계비속 공제 | 5,000만 원 |
| 미성년자 공제 | 2,000만 원 |
| 기타친족 공제 | 1천만 원    |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용한다.

#### 4) 타 부동산 세제와 상속·증여세 연계

상속·증여세는 부동산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와 연계되어 있다. 상속증여세와 관련된 부동산보유세는 주로 종합부동산세로서 주택가격 안정, 지역균형발전, 조세형평성 제고의 목적으로 2005년 세대합산 전국 누진과세체제로 부동산 고자산가 대상의 세금으로 도입되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 일반 토지 등의 종합합산토지분,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별도합산토지분으로 구분과세되며 모두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다.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세대합산으로 도입되었으나 2009년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이후 인별합산으로 변경되어 유지되고 있다. 2019년 기준 종합부동산세는 징수액 기준 약 2.7조 원이다.

양도소득세는 주로 부동산과 주식 등 금융투자에서 발생한 거래 시 양도차액에 대해 과세하는 세제이며, 1967년 11월 부동산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에 근거하여 부동산 양도차익의 50% 세율의 투기억제세로 도입되었다. 2019년 기준 양도소득세는 징수액 기준 약 16.1조 원이며, 양도가액의 부동산 자산 비율로 추정된 부동산분 양도소득세는 약 11.5조 원 규모이다.

부동산보유세 및 양도소득세는 이에 대한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증여를 선택하는 경우로 이어져 상속·증여세의 체계와 연계된다.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에서 합산의 단위를 인별, 부부별, 또는 세대별로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세제마다 달라 이에 대한 일체적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부동산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여를 선택하는 경우 이러한 회피 가능한 조항에 대한 점검과 정비가 필요하다.

#### 4. 상속·증여세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 장에서는 상속·증여세의 문제점을 공제조항 등 감면 규정의 시의성과 합목적성에 대한 검토와 부동산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 체계에서의 정합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밝히고 각 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1) 상속·증여세 체계의 문제점

상속·증여세 체계의 첫 번째 문제점은 명목세율 대비 실효세율이 낮아 본연의 도입 목적인 부의 집중과 세습 억제 기능이 약하다는 것이다. 과세미달을 제외하더라도 총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가액은 2018년 기준 약 64조 원 규모이다. 하지만 최종 결정세액은 상속세와 증여세 합계 7.8조 원 수준이다. 최고 명목세율이 50%이지만 담세율 및 실효세율이 각 12.2%와 15.7%이며, 과세미달까지 포함한 총 상속·증여자산에 대한 실효세율은 10% 미만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국제비교는 주로 최고세율에 대해 이뤄지고 있다.<sup>10)</sup> 상속세 및 증여세가 양도소득세(자본이득세) 및 소득세와 연계되어 있어 단순 직접 비교가 어려운 점 외에도 최고세율만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이유이다.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의 담세율 및 실효세율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결정세액 산정 과정에서의 다양한 공제 등 감면조항 때문이다.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기준액이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금융상속공제, 기업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 다양한 공제조항들이 신설되고 그 기준액 역시 상향 조정되어 왔다. 특히 신설 확대되어 온 물적 공제조항들에 대해 시의성과 합목적성을 감안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한 이유이다.

10) “이래서야 자녀에게 기업 물려주겠다” … 韓, 상속세 명목세율 60% ‘OECD 1위’, 《서울경제》 2021년 5월 2일 자; “OECD 최고 상속세율? 각종 공제 빼면 선진국과 큰 차이 없어”. 《한국일보》, 2019년 5월 27일 자.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대비해 부동산자산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 통계청·한국은행(2020)의 2019년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산은 2019년 기준으로 1경 2,200조 원에 달한다. 이는 같은 해 국내 총생산 1,919조 원의 약 6.4배이며, 토지자산 8,767조 원은 국내 총생산의 약 4.6배에 달한다. 같은 해 국민대차대조표에서 조사된 주요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토지자산의 비율은 호주 2.91배, 영국 2.82배, 프랑스 2.80배, 일본 2.24배, 캐나다 1.88배, 독일 1.49배 등으로 우리나라의 비중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건이라면 자연스럽게 부동산자산과 관련된 세수가 그 비율 수준으로 높은 것이 정상인 것이다. 상속·증여세뿐 아니라 부동산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수준도 국제비교에서는 이러한 부동산 자산의 비중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리적인 것이다.

상속·증여세의 과세 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도 약 60%에 달한다. 경제성장과 도시화 속에서 부동산 자산을 축적해 온 세대가 고령화되면서 최근 상속 및 증여가 늘고 있다. 이는 베이비 붐 세대 등의 고령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추세에 더해 최근 다주택자 중심으로 부동산보유세 및 양도소득세에 대한 일부 강화에 따라 증여 방식으로 세부담을 회피하는 경향과 맞물려 증가 속도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보유세 및 양도소득세에 대한 절세 전략으로 세대 간 증여 및 세대생략 증여가 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상속·증여가 부동산보유세와 양도소득세의 회피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부동산보유세 및 양도소득세가 합목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상속·증여세제에서 연관 조항을 정비해야 함을 의미한다.

## 2) 공제 관련 규정 정비

### (1) 금융재산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는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금융재산이 양성화되면서 금융재산에 대한 과세가액이 늘어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세부담 완화 기조<sup>11)</sup>의 연장선상에서 금융저축 장려 등의 명분으로 1997년 도입되

었다.<sup>12)</sup> 2020년 현재 금융재산상속공제금액은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2천만~1억 원 이하일 경우 2천만 원, 1~10억 원 이하일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의 20%, 10억 원 초과일 경우 2억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한다.

금융재산상속공제의 문제는 공제 도입의 명분이 현재 상황에서 유효하지 않다는 데 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는 금융저축 장려라는 개정 명분에도 불구하고,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로 인한 금융재산에 대한 과세가액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일시적 성격의 공제제도이다.<sup>13)</sup> 부동산과 같은 다른 유형의 상속재산의 시가반영률이 낮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명확히 파악되는 재산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것은 유형 간 수평적 형평성 논리의 과도한 적용이며, 큰 틀에서 상속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이다. 관련하여 상속재산 중 현금 및 수표가 상속재산인 경우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현금, 수표, 금융재산 간 동일한 적용에 대한 문제제기도 지속되고 있다.<sup>14)</sup>

또한 시가반영률이 낮았던 부동산 등 다른 유형과의 수평적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한 금융재산상속공제의 실질적 명분이 현재로서는 지속되기 어려워졌다. 기본적으로 상속·증여세의 부과 대상인 부동산자산 가액은 시가평가 원칙이며 비교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평가가액으로 적용한다. 부동산자산의 공시가격도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당시에 비해 현실화 수준이 높아졌으며,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현실화 로드맵<sup>15)</sup> 속에서 더욱 시가에 근접해질 예정이다. 현금 및 수표를 다른 금융재산과 분리하여 해당 공제적용을 하지 않는 ‘금융저축 등에 대한 장려’의 명분 역시 상속세 공제와

11) 상속세법(시행 1994.1.1.)(법률 제4662호, 1993.12.31., 일부개정)【제정·개정이유】.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 1997.1.1.)(법률 제5193호, 1996.12.30., 전부개정)【제정·개정이유】.

13) 국회예산정책처, 2017. 『조세의 쟁점과 이해(5 상속세 및 증여세)』, p.55.

14) “현금, 금융재산 상속공제서 제외… 국세청 유권해석”, 《동아일보》, 1997년 12월 12일자.

15) 국토교통부,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 발표」(국토교통부, 2019.12.17).



같은 비본질적 제도가 아닌 다른 근본적 유인 제도를 통해 추진해야 할 성격이므로, 이를 종합할 때 금융재산상속공제는 현 시점에서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2) 동거주택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의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보장하고 중산층의 장기주택보유자를 우대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2009년에 도입되었다.<sup>16)</sup> 상속개시일 현재 직계비속 상속인이 받는 상속재산가액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동거주택이 포함된 경우 6억 원 한도로 상속주택가액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요건은 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는 자, ② 동거한 직계비속 상속인이 모두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 ③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1세대 1주택 요건의 충족이다. 2009년 도입 당시 5억 원 한도에 주택가액의 40%였으나 이후 점차적으로 공제범위가 넓어져 현재 6억 원 한도의 주택가액 100%를 적용하고 있다.

동거주택상속공제의 문제점은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완화와 장기주택보유 우대라는 명분이 실제 상속세 과세 대상의 성격과 모순적이라는 데 있다. 먼저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치는 이미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 30억 원, 기초공제 또는 일괄공제(5억 원) 등의 포괄적인 상속공제조항에 충분히 존재한다. 또한 2018년 기준 상속세 과세대상 피상속인 수 8,002명은 당해 연도 사망자 29만 8,900명의 2.7% 수준으로 소위 중산층의 대부분은 이미 상속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현재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상속인 중 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오피스텔, 건물, 토지 등 다른 유형의 부동산 자산이 있는 경우를 걸러내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사망자 대비 상속세 관련 사망 피상속인의 적은 비율로 볼 때, 상속세의

16)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 2008.1.1.] [법률 제8828호, 2007.12.31., 일부개정【제정·개정 이유】].

기존 체계에서 상속세 대상이 되는 소수의 상속인은 이미 사회적으로 일정 수준의 부가 축적된 계층으로 볼 수 있어 중산층 대상 상속세 부담감면이라는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며, 장기주택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등에서의 혜택이 이미 충분히 있으므로 이것에 대한 상속공제는 과도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거주택상속공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필요하다. 공제제도를 조세지출 행위로 이해할 때 이렇게 명분에 맞지 않는 조세지출을 중단하고, 이를 주거취약계층을 포함한 주거권 보장에 대한 지원에 지출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3)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는 당초 특수한 가업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소규모 가업의 육성 및 장려정책의 일환으로써 피상속인의 가업이 그 후세에 이어질 수 있도록 상속인의 가업상속을 장려하기 위한 명분으로 도입되었다. 1987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9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특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1997년 농부나 어부 등의 상속에 대한 1억 원 공제한도금액으로 도입된 작은 조항으로<sup>17)</sup> 2007년까지 한도 규모가 유지되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8년 세제개편에서 그 공제한도액을 3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공제요건과 이행의무 등 현행 제도의 틀이 만들어졌으며, 이후 박근혜 정부 시기를 거쳐 한도금액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최대 500억 원에 이르게 되었다.<sup>18)</sup>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상속할 경우, 상속 개시 시점 기준 과거 3년간 매출액 평균 3천억 원 또는 자산총액 5천억 원 이내라면 적용 가능할 정도로 중견기업까지 공제대상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 것이다.<sup>19)</sup> 현재 가업상속 공제금액한도는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17) “[이슈체크] 가업상속공제 ③ 독일 헌법불합치·일본 엄격히 운영, 미국은 폐지 … 한국만 거꾸로 확대”, 《조세금융신문》, 2019년 6월 14일 자.

18)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 1997.1.1.][법률 제5193호, 1996.12.30., 전부개정【제정·개정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 2008.1.1.][법률 제8435호, 2007.5.17., 타법개정【제정·개정이유】].

에 따라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 경영의 경우 200억 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 경영의 경우 300억 원, 30년 이상 계속 경영의 경우 500억 원<sup>20)</sup>이다.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별표에 따른 적용 해당업종은 계속 확대되어 거의 모든 업종을 망라하고 있다. 가업상속제도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 자녀 등 향후 상속인에 대한 사전증여분 역시 세액을 경감해 주는 가업승계제도로 이어진다. 현재 해당 공제액은 다른 공제액에 비해 크지 않으나 2008년 이후 적용 업종, 업체규모, 공제규모가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 10년 등 가업상속공제혜택 조건이 맞춰지는 시점부터 공제액수가 크게 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가업상속공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상속공제한도금액<sup>21)</sup>과 적용대상 업종<sup>22)</sup>이 도입 명분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확장되었다는 것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공제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근본적 존속 취지에 배치되며, 해당 공제와 관련이 없는 상속인 및 수증인과의 조세 형평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공제한도금액과 적용업종의 규정기준의 근거 역시 명확하지 않아 향후 추가적인 한도 확대와 업종 확대 조정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 요컨대, 가업상속공제가 가업으로서 이어질 가치가 있는 소형 자영업체 등보다는 중견기업 경영주들의 절세와 경영권 자녀승계를 촉진하는 데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그뿐만 아니라 가업상속 후 공제적용 조건 유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관리에 따른 행정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

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과 시행령 제15조에 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 금액이 3천억 원 이상인 기업 또는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함.

20) 500억 원은 2017년 기준 연봉 3519만 원인 근로자 1,420명의 연봉총액과 같다(조세금융신문, 2019.6.14).

21) 초기 최대한도 1억 원에 재산가액의 20% 수준이었으나 현재 최대 500억 원에 재산가액 100%까지 확대됨.

22) 최대한도가 1억 원이던 2007년 말까지는 소득세법 등에 등록된 업종으로 광범위하게 규정되었다가 2008년 한도 30억 원으로 대폭 조정하면서 적용 업종을 줄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다시 확대됨.

제도 있다.

한편, 가업상속공제를 옹호하는 논리 중 상속세를 내기 위해 경영권을 포기해야한다는 주장은 과장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 기본적으로 법인은 상속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세 납부를 위한 피상속인의 자금마련에 대한 지분 매도 등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대주주인 피상속인과 자녀들의 개인적 문제로서 해당 법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조건인 일정 지분을 유지 등을 위해 10년 이상 기업공개나 유상증자 등을 못하게 된다면 대주주 일가의 개인적 절세를 위해 해당 법인기업의 장기적 발전을 막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기존 법인뿐 아니라 자산가들이 상속·증여세 절세를 위해 법인을 만들고 이를 자녀들에게 승계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법인의 경영권을 경영전문인이 아닌 자녀에게 승계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가업상속공제가 시장경제와 경제질서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명분과 결과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

가업상속공제의 명분이 되고 있는 경영권의 유지는 사실상 피상속인의 가업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조세회피의 문제와 법인 경영권을 대주주 자녀에게 이전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사회적으로 합리화해 주는 문제가 있어, 그 실리가 부의 세습과 집중을 억제하고자 하는 상속·증여세 존속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을 유지함으로써 얻는 사회적 혜택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의 대상 범위를 영농 등 사회적으로 타당한 가치를 위해 한정적으로 적용하는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 사전증여재산 및 재차증여재산 합산과세기간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의 과세표준 계산 시 상속재산의 가액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내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사전증여행위는 기본적으로 누진세율의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부당한 상속세 회피행위로 볼 수 있으며 사전증여재산 합산 조항은 이를 방지하고 조세

부담 공평 도모를 위한 것이다.<sup>23)</sup>

사전증여재산 합산 기준 기간은 상속세 제정 후 1974년까지 상속인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 1990년까지 상속인의 경우 3년 이내, 비상속인의 경우 1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 1998년까지 각각 5년 이내와 3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 이후 현재까지 각각 10년 이내와 5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점차 기간이 확대되어 왔다.<sup>24)</sup> 2005년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 판결에서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선고 2005헌가4의 결정이 있다.

현행 사전증여재산 합산기준기간의 문제점은 기간이 현실 변화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현재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상속에 대한 사전 준비가 활발해지면서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며느리나 사위 등에게 사전증여를 할 경우 5년 이후 상속 시 상속인이 아니게 되면 사전증여재산 합산에서 빠질 수 있게 되면서도 실질적으로 상속을 받은 자녀와는 자산을 공동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하나의 절세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상속을 미리 준비하여 사전증여를 해온 상속세 대상자와 그렇지 않은 대상자 간에 세부담 형평성 문제가 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제도는 도입 이후 세무행정수준과 상속 규모 및 상속세 대상자의 증여가 늘어나면서 합산기준 기간을 상속인과 비상속인 각각 1년, 3년과 1년, 5년과 3년, 10년과 5년으로 늘려왔다. 가장 최근 연장 개정 시점이 1999년이며 이후 20년 이상이 경과했다. 현재 전산화와 함께 강화된 세무행정역량을 감안할 때 사전증여재산 합산기준 기간을 상속인과 비상속인 각각 20년 이내와 10년 이내로 연장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증여세 산정 시 고려하는 재차증여 합산과세기간은 현재 10년으로 이것도 1999년 1월 1일 개정 당시 기존 5년이었던 과세합산기간을 연장한 것으로,<sup>25)</sup> 이후 20년 이상 유지되어 왔다. 재차증여 합산과세기간 역시 상속세

23) 헌법재판소, 2006.7.27. 선고 2005헌가4 결정.

24) 상속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연혁법령.

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연혁법령(시행 1999.1.1.)법률 제5582호, 1998.12.28., 일부개정【제

산정 시 사전증여재산 과세기간의 연장 논리와 마찬가지로 2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3) 타 부동산세제와의 연계 고려한 정비

#### (1) 자산형성 및 관리 단위로서 부부 관련 규정의 정합성

상속세와 증여세에서 배우자에 대한 상속 및 증여공제 규모를 각각 최대 30억 원, 6억 원으로 직계존비속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규정한 것은 부의 세대 간 이전이 아닌 수평이전이라는 이유 때문이다.<sup>26)</sup> 1995년 상속세 개정사유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의 배우자 공제액을 자산형성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 1997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결혼년수와 비례하여 1억 원+(결혼년수×1천200만 원)으로 계산한 가액을 공제받거나 법정상속지분 안에서 10억 원 한도 내 실제 상속받은 가액을 기준으로 공제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후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하여 30억 원을 한도로 법정상속분 안에서 공제하도록 개정했다.<sup>27)</sup>

문제는 이러한 논리가 종합부동산세 인별 합산의 논리와 상충한다는 것이다. 상속·증여세에서는 부부 간 자산 이전을 수평적 이동으로 간주하여 공제금액을 크게 설정함으로써 부부를 자산형성 및 관리 단위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나,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개별로 적용하고 있어 같은 부동산 자산에 대한 두 개의 법령에서 인정하는 자산형성 및 관리단위로서의 부부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 상충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합한 적용제도 속에서 조세회피

정·개정이유】.

26)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의 쟁점과 이해(5 상속세 및 증여세)』(국회예산정책처, 2019), p.119.

27) 상속세법(시행 1995.1.1.)법률 제4805호, 1994.12.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 1997.1.1.)법률 제5193호, 1996.12.30.,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증여의 경우 원래 5천만 원+(결혼년수×500만 원)으로 정했다.

가 가능해지고 있는 문제도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제정 당시 전국 세대별 합산 방식이었으나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sup>28)</sup>로 2009년 개정 시 인별 합산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종합부동산세 체계의 누진성으로 인해 해당 판결과 이에 따른 인별 합산 방식에서의 법개정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의 규모가 크게 감소했고 이것은 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통한 조세형평성 제고라는 도입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2008년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방식이 생활 실태에 부합한 과세실현과 조세회피방지 차원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① 민법상 부부별산제 채택, ②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까지 포함하는 세대합산의 당위성 결여, ③ 기존 헌법재판소 선고 2004헌가6 결정에서의 부부자산소득합산과제 규정에 대한 위헌 판결, ④ 기존 상속·증여세의 증여추정규정으로 조세회피 방지 달성 가능, ⑤ 독신자 및 사실혼 부부 대비 차별의 문제 등의 다섯 가지 주요 이유로 세대합산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가 과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①에서 민법상 부부별산제는 혼인 전 일방이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 취득재산을 인정함으로써 일방적인 재산권 행사 등 부작용 완화와 성평등 실현 차원에서의 접근으로 이혼 등 부부 간 재산권 분쟁에 있어서 부부 양방의 재산권을 모두 보호하는 취지로서, 이를 조세회피 방지 차원에서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방식에 적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유사한 성격의 상속·증여세에서의 공제적용 논리를 연계하는 것이 합당하다. 또한 ②의 문제는 자산형성 및 관리의 단위를 미국과 같이 배우자까지로 제한하는 것으로 해소될 수 있는 것이다.<sup>29)</sup> ③과 ⑤는 여전히 논쟁적인 부분으로, 헌법재판소 선고 2004헌가6 결정 중 권성·송인준 재판관은 “소비단위에 있어서 혼

28) 헌법재판소 선고 2006헌바112 결정에서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방식이 헌법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에 반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29) 이와 관련한 대표적 연구로는 유일연(2008), 이동식(2010), 이동식(2020)의 연구가 있음.

인한 부부를 독신자나 사실혼관계의 부부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자산소득은 그 소득의 원천이 근로나 사업 등의 노력 없이 부가 만들어내는 일종의 불로소득으로서 근로소득 등에 비하여 담세력이 높기 때문에 중과세하는 것이 오히려 조세공평의 원칙에 합당”하다는 반대의견을 낸 바 있다. ④는 현재 체계에서 실제로 증여를 통한 조세회피를 막는 장치가 충분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상속·증여세가 조세회피를 방지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볼 때 타당성이 떨어진다. 예컨대 배우자에 대한 증여세 공제액은 1997년 이전에는 5천만 원+(결혼년수×500만 원)이었으나 현재 6억 원으로 일괄적용해 공동명의 등을 활용할 경우 증여의제 및 증여추징을 하더라도 증여세를 내지 않고도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만약 부부별산제도를 근거로 한 헌법재판소 선고 2006헌바112 결정의 종합부동산세 세대별합산 방식 위헌판결의 논리를 그대로 따른다면 상속·증여세에서의 배우자 공제 규모도 타 인적공제 규모를 고려하여 현재의 1/12~1/6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상속·증여세 관련 연구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공제 한도를 높여서 부부 간 자산이전에 과세를 완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우세하다.<sup>30)</sup> 따라서 “자산 소득은 …… 노력 없이 부(富)가 만들어내는 일종의 불로소득으로서 …… 중과세하는 것이 오히려 조세공평의 원칙에 합당”하다는 헌법재판소 선고 2004헌가6 결정 중 권성·송인준 재판관의 반대의견과 헌법재판소 선고 2006헌바112 결정에 내 재하는 문제점들을 종합해 볼 때, 오히려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방식을 ‘부부 합산’으로 개정함으로써 부동산 자산의 형성 및 관리 단위를 상속·증여세와 동일하게 부부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 (2) 양도소득세의 회피 출구로서의 상속·증여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증여의 무상이전을 양도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피상속인 또는 증여인은 피상속 또는 증여시점에 양도소

30) 박성만·정범식(2011)의 연구가 대표적임.



득세를 내지 않는다. 상속인 또는 수증인은 상속 또는 증여 이후 시점에 해당 자산을 양도하고자 할 때 그 취득가액을 당초 피상속인 또는 증여인이 취득한 가액이 아닌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기준의 상속가액 및 증여가액으로 산정하고 있다.<sup>31)</sup>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소득세법 제97조의 2에서 증여 이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증여 후 5년의 기간이 넘으면 근본적으로 증여자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은 여전하여, 다주택 보유로 인한 보유세 및 양도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세회피 수단으로 증여 후 5년 뒤 매각이라는 이른바 절세방법이 하나의 공식처럼 굳어져 있어 공평과세를 저해하고 있다.

상속·증여한 재산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 산정의 문제점은 취득가액을 최초 취득가액이 아닌 상속 또는 수증 시점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저해하고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데 있다. 부의 세습과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존속하는 상속·증여세가 양도소득세 회피의 출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상속 또는 증여 이후 시점의 해당 자산의 양도 시 취득가액에 대한 적용시점 기준의 문제 때문이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자산소유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효과를 가지고 있어 상속·증여세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의 취득일 기산 규정으로 인해 상속 및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문제는 ① 피상속 또는 증여 이후에도 이후 자산의 양도 시 최초 취득가액을 유지하게 하여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양도시점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연기<sup>32)</sup>하거나, ②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의 5년 기한 규정을 15년 이상 등으로 장기화하여 양도소득세 회피 시도를 무력화하는 방법, ③ 상속 또는 증여시점을 양도소득발생으로 의제하여 상속 및 증여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법<sup>33)</sup> 등이 있다. 상속 및 증여시점에 양도

31) 국회예산정책처. 2017. 『2017 조세의 이해와 쟁점(5 상속세 및 증여세)』. 115쪽.

32) 국회예산정책처. 2017. 『2017 조세의 이해와 쟁점(5 상속세 및 증여세)』. 115쪽.

33) 국회예산정책처. 2017. 『2017 조세의 이해와 쟁점(5 상속세 및 증여세)』. 115쪽.

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방법은 현재 무상이전을 양도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 원칙 상 어려움과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라는 문제가 있고,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의 5년 기한 규정을 15년 이상 등으로 장기화하는 방법은 근본적인 접근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 및 수증 이후 자산의 양도 시 최초 취득가액을 유지하도록 해당 조항을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 5. 결론

2018년 기준 현재 상속·증여세는 최고 명목세율 50%임에도 둘을 합한 실효세율은 15.7% 수준이고 과세미달 자산가액까지 합쳐 계산하면 그 비율은 10% 미만이다. 상속세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의 수는 2018년 기준 전체 사망자 수의 2.7% 수준에 불과하며 상속·증여세의 통합 결정세액도 2018년 기준 7.8조 원으로 전체 세수 378조 원의 약 2% 수준이다. 부의 세습과 집중억제를 통한 실질적 평등원칙 실현이란 도입 명분에 걸맞지 않는 수준이다.

1950년 두 세제를 제정할 당시에 비해 자산격차는 더욱 벌어졌지만, 상속·증여세의 역할과 기능은 오히려 약해졌다. 제정 이후 명목세율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다양한 공제 및 감면조항들이 추가되고 강화되어 온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약화된 과세체계는 부동산보유세 및 양도소득세와의 부동산 과세체계 속에서 오히려 약한 고리가 되어 부동산 조세회피로서의 출구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연구에서는 도입 목적과의 합목적성과 여건 변화에 따른 시의성을 기준으로 상속·증여세의 공제 등 감면조항을, 정합성과 일체성을 기준으로 부동산 과세체계 내에서 상속·증여세제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당시 시장가액보다 낮았던 부동산자산에 대한 상대적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일시적 성격으로 도입된 금융재산에 대한 금융

재산상속공제의 경우 비교 대상인 부동산 자산의 기준가액의 시장가액 원칙과 공시가격의 현실화 추세를 감안하여 폐지를 제안했다. 동거주택상속공제의 경우 상속세 대상이 되는 상위 소수의 상속인을 대상으로 중산층 대상 상속세 부담감면과 장기주택보유 우대라는 명분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역시 폐지를 제안했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당초의 도입 명분에서 벗어나 적용대상의 기준과 범위, 공제액 규모가 과도하게 확대되어 중견기업 소유주 일가의 개인적 절세와 자녀가업승계 촉진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대폭 축소를 제안했다. 한편, 사전증여재산 합산의 기준은 고도화된 세무행정 역량과 상속·증여 규모 증가에 따른 합산 기준기간 연장 추세를 반영하여 상속인·수증인과 비상속인 현행 10년 이내와 5년 이내를 각각 20년 이내와 10년 이내로 연장하여 보다 정교한 과세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상속·증여세의 배우자공제의 경우, 부부별산제도를 근거로 한 헌법재판소 종합부동산세 세대별합산 방식 위헌판결의 논리를 그대로 따른다면 상속·증여세에서의 배우자 공제 규모도 타 인적공제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해당 판결에 내재하는 상속·증여세 관련 문제 등을 종합할 때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방식을 ‘부부합산’으로 개정하여 부동산 자산의 형성 및 관리 단위를 상속·증여세와 동일하게 부부로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상속 및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문제는 피상속 또는 증여 후에도 이후 해당 자산의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 기준을 상속 및 수증 시점의 가액이 아닌 피상속 및 증여인의 최초 취득가액으로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소득격차와 자산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는 교육격차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소득격차와 자산격차를 벌리면서 우리 사회의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소득·자산·교육으로 인한 계층분리, 그리고 이로 인한 위화감과 열패감 등 관련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2020년 OECD 최하위인 우리나라의 합계출산률 0.84<sup>34)</sup>를 이에 대한 청년·중년 세

34) 통계청, 「2020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 보도자료」(통계청, 2021).

대의 합리적인 판단과 소극적 저항의 결과라고 연결지어 해석할 수 있는 이유이다. 상속·증여세는 부의 세습과 집중 억제와 상징과도 같은 세제이다. 상속·증여세의 공제조항과 규정을 부동산 세제와의 정합성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무관심 속에서 약화되어 온 상속·증여세의 기능을 복원하고 여기서 발생한 세수를 보다 적극적으로 부의 재분배와 고른 기회부여를 위해 활용해야 할 시점이다.

원고접수일: 2021.02.19

1차 심사완료일: 2021.04.05

1차 수정완료일: 2021.05.24

2차 심사완료일: 2021.06.14

개재확정일: 2021.06.20

최종원고접수일: 2021.06.23

Abstract

A Review on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Focusing on Deductions and Coherence with Property-related Taxes

Park Joon

In 2018, the proportion of decedents in total number of deaths is less than 3%, tax burden ratio and effective tax rate are 12.2% and 15.7% respectively in spite of the highest nominal tax rate of 50%. Total determined tax amount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7.8 trillion Won is just around 2% of the total tax revenue of 378 trillion Won. The current asset inequality has been worsened compared with that in 1950 when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were enacted. The role and function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which were introduced with the highest tax rate of 90% for the purpose of easing the concentration and inheritance of wealth has been weakened. Lowered tax rate and increase of deductions are the main reasons behind it. This study reviewed the deductions in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nd issues with property-related taxes. Based on the review, this study suggests 1) abolition of deduction for financial asset, cohabiting houses, 2) reduction of deduction for family business succession, 3) extension of aggregation period of ex-gifted asset in the calculation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from current 10 years to 20 years, 4) change of aggregation from by person to by married couple in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to make the principle of taking a couple as a unit of asset-building and management with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nd 5) change of date of the acquisition of property in calculation of capital gain tax from date of inheritance or gift to original acquisition date when the inheritors or devisee sell the inherited or gifted assets.

**Keywords:** inheritance tax, gift tax, deduction for financial asset, deduction for cohabiting houses, deduction for family business succession, aggregation for married couple

## 참고문헌

- 국세청. 2005~2020. 『국세통계연보』. 국세청.
- 국토교통부. 2019.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9.12.17).
- 국회예산정책처. 2017. 『2017 조세의 이해와 쟁점(5 상속세 및 증여세)』. 국회예산정책처.
- 기획재정부. 2019. 『조세개요』. 기획재정부.
- 김두복·서희열. 2018. 「상속세 과세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과세체계와 배우자상속공제를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제35권 제2호, 51~80쪽.
- 미래에셋은퇴연구소. 2019. 『고령사회와 상속시장의 현황 및 과제』. 미래에셋 은퇴리포트 제43호.
- 박성만·정범식. 201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공제 개선방안」. 《재정정책논집》 제13권 제4호, 223~260쪽.
- 상속세법,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연혁법령 및 현행법령
- 서울경제. 2021.5.2. “‘이래서야 자녀에게 기업 물려주겠다’ … 韓, 상속세 명목세율 60% ‘OECD 1위’”.
- 서정우. 2018. 「주요국의 상속세 과세제도 비교 및 시사점: 인적·물적공제 및 세율제도를 중심으로」. 《조세연구》 제18권 제3호, 137~168쪽.
- 성락인·박정훈·이창희. 2003. 「상속세 및 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 제44권, 163~363쪽.
- 세정일보. 2018.3.21. “‘사전상속·증여’ 급증 … 2020년 상속·증여액 104조 돌파 예상”.
- 유일언. 2008. 「부부 내지 세대단위의 과세와 공평부담의 원칙」. 《법학연구》, 19권 2호, 3~31쪽.
- 이동식. 2010. 「가족합산과세제도의 합헌성: 중부세 사건에 대한 헌재판결의 타당성검토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39권 제2호, 545~570쪽.
- 이동식. 2020.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부합산과세제도 도입방안」. 《조세법연구》, 제26권 제3호, 311~351쪽.
- 이상신. 2019.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세무와 회계저널》 제20권 제5호, 81~103쪽.
- 이충희·최한수. 2019. 「상속세와 관련한 오해」. 《경제개혁이슈》, 1~16쪽.
- 조세금융신문. 2019.6.14. “[이슈체크] 가업상속공제 ③ 독일 헌법불합치·일본 엄격히 운영, 미국은 폐지 … 한국만 거꾸로 확대”.
- 최명근. 1990. 『상속과세론』. 세경사.
- 최명근. 2007. 『상속과세론』. 경제법률회사.

- 통계청. 2021. '2020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 보도자료.
- 통계청·한국은행. 2020. 『2019년 국민대차대조표』.
- 한국감정원·국토교통부. 2006~2019. 『부동산거래현황통계』. 한국감정원·국토교통부.
- 한국일보. 2019.5.27. "OECD 최고 상속세율? 각종 공제 빼면 선진국과 큰 차이 없어".
- \_\_\_\_\_. 2020.9.20. "세금 올리자 '우르르' ... 강남 3구 아파트 증여, 거래 절반 육박",
- 한국재정학회. 2019. 『상속세 및 증여세 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상속증여세제 개선방향에 관한 공청회』.
- 홍승현·오문성. 2019.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법제연구》 제56권, 143~167쪽.
- Lee, N. 2007. "Inheritance tax—an equitable tax no longer: time for abolition?" *Legal Studies*, 27(4), pp.678~708.
- OECD. 2021. *Inheritance Taxation in OECD Countries*. OECD.
- Piketty, T., & Saez, E. 2013. "A theory of optimal inheritance taxation". *Econometrica*, 81(5), pp.1851~1886.
- West, M., 1893. "The theory of the inheritance tax". *Political Science Quarterly*, 8(3), pp.426~444.